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44호
----------	---------

제출년월일 2024. 11. .

제출자 김현주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자금관리 규정을 명시하여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021. 10. 19.) 및 시행(2022. 4. 20.)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에 따라 강화된 자금 운영기준 신설(안 제4조의2)
 - 지역화폐 자금관리를 시금고에 설치·운영 관리하여 안정성 규정
 -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공개하여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 나.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의 할인 판매 비율의 범위를 명시(안 제6조제2항)
- 다. 가맹점 등록규정 정비
- 라.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환전, 운영대행사 등의 정보공개 조항 신설(안 제22조의2)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1. . ~ 2024. 11.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를

가) 협의기간 : 2024. 6. . ~ 2024. 11.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일자리경제과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를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 라 한다)를” 을 “지역사랑상품권을” 로, “자(이하 “개별가맹점” 이라 한다)를” 을 “자를”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화폐” 를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 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행한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판매대행사” 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중 “지역화폐” 를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을 “지역사랑상품권의 관리·운영”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화폐의 발행 등)” 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화폐를” 을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화폐” 를 각각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 를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전자지역사랑상품권으” 로, “전자지역화폐는” 을 “전자지역사랑상품권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화폐” 를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운영자금 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운영자금” 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화폐의” 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로, “지역화폐로” 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화폐를” 을 “지역사랑상품권을” 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화폐” 를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의 범위는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재난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을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를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로, “지역화폐의” 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역화폐” 를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화폐가” 를 “지역사랑상품권이” 로,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를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자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맹점 등록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업소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별가맹점**” 을 “**가맹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화폐 결제**” 를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로, “**지역화폐 소지자**” 를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화폐를**” 을 “**지역사랑상품권을**” 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지역화폐**” 를 각각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지역화폐**” 를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을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준수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을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로, “**지역화폐를 현금**” 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역화폐를**” 을 “**지역사랑상품권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화폐 소지자**” 를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로, “**지역화폐를**” 을 “**지역사랑상품권을**”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김포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시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화폐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로, “지역화폐를”을 “지역사랑상품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을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김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지역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화폐의 유통”을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또는 계약)”을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또는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체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대행사 등”을 “운영대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약(위탁 또는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를 “위탁 또는 계약 체결한 운영대행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판매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항 및 제4항 중 “지역화폐”를 각각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운영대행사 등의 관리) 시장은 운영대행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월 최신화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운영대행사 등의 이름

2. 운영대행사 등의 대표자
3. 월별 상품권의 발행액 및 환전액 현황
4. 운영대행사 등의 연간 재무제표(연 1회)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5조 중 “지역화폐” 를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역화폐 소지자” 를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로, “지역화폐 권면금액” 을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 으로, “지역화폐 할인금액” 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금액”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u></p>	<p><u>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u>1. “김포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김포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u></p>	<p><u>제2조(정의) -----</u></p> <p><u>-----.</u></p> <p><u>1.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u></p>

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김포시 지역화
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
다)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21조에 따
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
다.

4. “판매대행사”란 운영대행사를
통해 지역화폐의 판매 및 충전,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2. -----
----- 지역사랑
상품권 -----

----- 자
를 -----
-----.

3. -----
----- 김
포시 지역사랑상품권 -----

-----.

4. “판매대행사”란 법 제2조제2
호에 따라 김포시 지역사랑상
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
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
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
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사랑상품권-----

-----.

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김포시 일원으로 한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로 하고, 모바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바일 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2장 지역사랑상품권의

관리·운영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

① -----

-----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
을 --.

② 지역사랑상품권-----
-----.

-----.

③ 지역사랑상품권-----
-----.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전자지역사랑상품권으-----
-- 전자지역사랑상품권은 ----
-----.

1. ~ 4. (현행과 같음)

5. ----- 지역사랑상품권-----

제4조의2(운영자금 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신 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 지역사랑상품권의 -----

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충전)·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

② -----

----- 지역
사랑상품권을 -----.

제6조(재정적 지원) ① -- 지역사
랑상품권 -----

-----.

② 시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
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의
범위는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재난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에 따라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
지역사랑상품권의 -----

----- 지역사랑

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운영대행사에게 확인이 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해 줄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생략)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

상품권 -----.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

---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 . <단서 삭제>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 <단서 삭제>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현행과 같음)
3.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
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
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
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
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
폐

② (생략)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생략)

<신설>

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랑상품
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
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
맹점-----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2. ----- 지역사랑상품권
을 -----

가. -----
----- 지역사랑
상품권

나. -----
----- 지역사
랑상품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
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 시
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모바일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 가맹점에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직접 구입한 소지자는 할인금액과 발행·환전·이체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전 받을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김포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

없도록 할 수 있다.

③ -----

----- 지역사랑상품권 -----.

제11조(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
--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
----- . ----- 지역사랑상품권을 -----

-----.

②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 지역사랑상품권을 -----
--.

1.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지역사랑상품권-----
----- 시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

2. 지역사랑상품권이 -----
----- 지역사랑상품권을 -----

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김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략)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장 지역화폐의 유통

제21조(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또는 계약)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

--

③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

-----.

제12조(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 -----

--- 지역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

-.

1. 지역사랑상품권 -----

2. (현행과 같음)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랑상품권 -----

제3장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제21조(지역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또는 계약) ① -- 지역사랑상품권 -----

한 기술을 가진 업체 및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 또는 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들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위탁 또는 계약)을 체결한 판매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대행사 등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이하 “운영대행사 등”이라 한다)는 지역화폐의 판매 및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운영대행사 등은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 업체-----

-----.

② ----- 운영대행사-----

-----.

③ ----- 위탁 또는 계약 체결한 운영대행사 -----

-----.

제22조(운영대행사 등의 준수사항) ① ----- 판매대행점 -----

----- 지역사랑상품권-----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역사랑상품권-----

-----.

④ 운영대행사 등은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등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

④ -----
-- 지역사랑상품권-----

-----.

제22조의2(운영대행사 등의 관리)

시장은 운영대행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월 최신화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운영대행사 등의 이름
2. 운영대행사 등의 대표자
3. 월별 상품권의 발행액 및 환전액 현황
4. 운영대행사 등의 연간 재무제표(연 1회)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5조(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
--- 지역사랑상품권-----

-----.

제26조(수수료 등의 환수) -----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 지역사

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
수하여야 한다.

랑상품권 권면금액----- 지역
사랑상품권 할인금액-----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2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4

제1조(목적)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제6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19.]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① 제4조 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0. 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19.>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1. 10. 19.>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9.>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1. 15.]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1. 15.]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조례로 정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

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0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상품권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9.>

부칙 <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9032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9. 2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39호, 2020. 9. 29., 일부개정]

경기도 김포시(일자리경제과), 980-255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김포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김포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2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판매대행사”란 운영대행사를 통해 지역화폐의 판매 및 충전,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김포시 일원으로 한다.
-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로 하고, 모바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바일 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1. 충전금액 및 충전한도
 2. 유효기간
 3. 환불방법
 4. 가맹점 정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충전)·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운영대행사에게 확인이 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해 줄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9.29.>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
 2.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③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9.29.>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모바일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9.29.>

제11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직접 구입한 소지자는 할인 금액과 발행·환전·이체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전 받을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김포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김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지역화폐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29>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는 협의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협의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역화폐의 유통

제21조(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또는 계약)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및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 또는 계약할 수 있다.

- ②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 등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위탁 또는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9.29.>

제22조(운영대행사 등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이하 “운영대행사 등”이라 한다)는 지역화폐의 판매 및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운영대행사 등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③ 운영대행사 등은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운영대행사 등은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 등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운영대행사 등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 등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운영대행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 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4장 보칙

제25조(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등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58>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39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